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 관리 메뉴얼

2020. 7. 10.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목 차

I. 산림기술자 자격증 자격 기준	1
1. 산림기술자의 정의	1
2. 산림기술자 자격의 종류	1
3. 산림기술자 자격증 자격 요건 및 업무범위	1
4.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9
II.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15
1.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 및 발급절차	15
2. 주요 조치사항 및 요령	17
3. 산림기술자 자격증 관련 서식	21
III.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27
1.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및 처리 절차	27
2. 주요 조치사항	27
3.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관련 서식	28
IV. 산림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	29
1. 산림기술자경력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	29
2. 주요 조치사항	29
3. 산림기술자경력증명서 관련 서식	30
V. 산림기술자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34
1. 산림기술자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34
2. 주요 조치사항	35
3. 행정처분 관련 주요 서식	36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업무흐름도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서 접수

(처리기간 7일)



기술등급 산정



시스템 입력 및
내부 기안·결재



수수료 가상계좌 안내
및 납부확인



자격증 발급 및 발송

주요 조치할 사항

- 신청서류 확인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 증명사진
 - 주민등록 초본(최근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전체)
 - 훈련 이수증 (교육 이수 증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 경력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
 - 경력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 자격 요건 확인
 - 기본 서류 일치 여부 확인
 - 자격증 취득 여부 및 일자 확인
- 경력 확인
 - 법인 면허 종류와 기술자 등록 여부
 - 경력 증빙서류를 통한 사업 수행 진위 여부
 - 자격증 취득 후, 사업 수행 및 경력 일수 산정
- 산정완료 후 자격번호 부여
 - 신청 등급과 산정등급 확인 후, 자격번호 부여

- 산림사업 법인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중복 발급 확인 후, 내부 기안·결재 진행

- 수수료 납부와 관련하여 가상계좌 번호 안내 후, 수수료 납부내역 실시간 확인

- 발급일자별로 총괄표 입력 후 자격증 발급
- 자격증 발송(아래 서류 동봉할 것)
 - 자격증 발급 알림 공문
 - 산림기술자 자격증
 - 기술인회 안내문
 - 회원가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

목차 1 산림기술자 자격증 자격 기준

□ 산림기술자의 정의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함
- 산림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제8조관련)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 산림사업의 설계·시공 및 감리
 - 임도의 시공 및 관리
 -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토석 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 산림기술자 자격증 종류

- 산림경영 기술자(특급·고급·중급·초급·기능특급·기능1급·기능2급)
- 산림공학 기술자(특급·고급·중급·초급)
- 녹지조경 기술자(특급·고급·중급·초급)

□ 산림기술자 자격증 자격 요건 및 업무범위

[별표 3] <개정 2019. 11. 5.>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

기술 종류	기술 등급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산림 경영	기술 특급	「국가기술훈련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기술 자	기술 고급	<p>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p> <p>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p>	<p>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시공 및 감리</p> <p>가.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 조성사업"이라 한다)</p> <p>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p> <p>다.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가지치기)사업</p> <p>라. 도시림등 조성사업</p> <p>마. 산림욕장의 조성사업</p>
	기술 중급	<p>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p> <p>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p>	
	기술 초급	<p>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p> <p>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p>	
	기능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시공 및 관리
	기능 1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p>1. 산림조성사업</p> <p>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p> <p>3.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가</p>

	<p>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6주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기능 2급 등급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6 지치기)사업 4. 도시림등 조성사업 5. 산림욕장의 조성사업</p>
<p>산림 공학 기술 자</p>	<p>기술 특급</p> <p>「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1.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시공 및 감리 가.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나. 임도사업 다. 사방사업 라.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에 관한 사업 마.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바.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사. 수목원 조성사업 아. 수목장림 조성사업 자. 산림복원사업 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p>
	<p>기술 고급</p> <p>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p>	

	<p>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4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기술 중급	<p>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p>

	<p>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기술 초급</p>	<p>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p>

		<p>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녹지 조경 기술 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p>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 또는 감리
	기술 고급	<p>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p> <p>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p>	<p>1. 수목원 조성사업의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 · 감리 <p>2. 도시림등 조성사업의 설계 · 시공 · 감리</p> <p>3.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중 건당 공사비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사업의 시공 및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하인 사업의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숲길은 제외한다) 나.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다. 수목장림 조성사업
	기술 중급	<p>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p> <p>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p>	<p>4. 숲길 조성사업의 시공, 숲길 조성사업 중 건당 공사비 규모가 3억원 이하인 사업의 설계 및 건당 공사비</p>
	기술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초급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정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규모가 1억원 이하인 사업 의 감리
----	--	------------------------

비고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란 기술종류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 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3.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이란 산림교육원과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산림공학 교육과정"이란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관련되는 산림기술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른 산림공학기술자 기술등급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다른 기술등급의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중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 분야의 관련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 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중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 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특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특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 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 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중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1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 분야의 관련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 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중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 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

※ 취득자격의 개정 자격 인정 범위

- 영림기술자 →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
- 1급 산림토목기술자 → 산림공학기술자 기술1급
- 2급 산림토목기술자 → 산림공학기술자 기술2급

□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

산림청고시 제2020-38호 별표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기준(제6조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전의 경력 인정 기준

가.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87호 2017.10.31. 일부개정)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 취득자의 경력 인정

- 1) 산림기술자 기술 2급(산림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진 사람이 기술 1급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전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감독관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한하여 경력 인정

해석) 자격취득사항 : 기술 2급(2010.1.1.), 기술 1급(2015.1.1.)

경력인정기준 : 기술 2급 취득 일부부터 경력인정이 가능하고, 기술등급 기준은 기술 1급에 해당. 단, **현장대리인, 공사감독관**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한함

- 2) 기능특급·기능1급·기능2급을 가진 사람이 산림기술자 기술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전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감독관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한하여 경력 인정

해석) 자격취득사항 : 기능 1급(2010.1.1.), 기술 2급(2015.1.1.)

경력인정기준 : 기능 1급 취득 일부부터 경력인정이 가능하고, 기술등급 기준은 기술 2급에 해당. 단, **현장대리인, 공사감독관**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한함

나.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 취득자의 경력 인정

- 1) 산림기술자 직무범위¹⁾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경력을 발주청 등에서 확인한 경우 그 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100% 인정하되 현장근무 일수만 인정, 다만 산림 및 조경관련 사업에 참여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관 등 직무내용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해석) 자격취득사항 : 산림기사(2020. 6. 1.)

경력인정기준 : 국가기술자격 취득 이전 경력을 인정. 단, 경력확인서(별지 제14호서식) 기술경력란에 직무내용과 종사기간, 경력일수 등에 대한 항목을 기재한 경우 **사업기간에 한하여 100%인정.**

- 2) 산림기술자가 기관에서 증명하는 경력확인서류²⁾에 직무내용별 종사기간³⁾을 인정하여 제출할 경우 그 직무범위와 기간에 대해 그 기간을 일수로 기재 시 100% 인정.

해석) 자격취득사항 : 산림기사(2020. 6. 1.)

경력인정기준 : 국가기술자격 취득 이전 경력을 인정. 단, 경력확인서(별지 제14호서식)에 **직무내용(관련부서)별 종사기간**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로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100% 인정

1) 직무범위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업무범위

2) 경력확인서류 : 1) 경력확인서 (별지 14호 서식)

2) 경력관리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엔지니어링협회 등)

3) 종사기간 : 해당부서 근무기간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후의 경력⁴⁾ 인정 기준

가. 공통적용

- 1) 경력확인서류에 산림기술자의 직무내용과 기간을 기준으로 자격 등급의 기준년도 일수 이상인 경우 해당 기술등급을 인정하고, 1년은 365일을 기준으로 하며, 직무내용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불인정
- 2) 경력확인서류에 사업명, 발주청, 직무내용(전문분야, 사업종류, 담당 업무, 책임정도)과 종사기간, 경력일수 등에 대한 항목을 기재한 경우 100% 인정. 이 경우에 관련법령⁵⁾ 등에서 산림 및 조경관련 사업과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동일 적용.

해석) 자격취득사항 : 조경기사(2010. 6. 1.)

경력인정기준 : 1) 조경기사 취득 후 경력확인서(별지 제14호서식) 기술경력란에 직무내용과 종사기간, 경력일수 등에 대한 항목을 기재한 경우 100%인정.
2)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하여 경력관리 한 경우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제출 시 경력 인정. 단, 직무내용이 산림기술자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사기간의 50% 인정

- 3) 같은 기술종류 내에서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1회만 인정하고, 다른 기술종류의 경우에는 별도로 일수 인정

해석) 사업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경력인정방법

- 같은 전문분야의 사업은 시작일부터 마지막일까지 인정
예) 조림(산림경영) : 3.25. ~ 4.15, 숲가꾸기(산림경영) 4.1.~4.25.
☞ 3.30 ~ 4.30 (산림경영 25일 인정)
- 다른 전문분야의 사업은 각각 인정
예) 산림병해충 방제(산림경영) : 5.1~5.30, 사방(산림공학) : 5.25~6.30
☞ 5.1.~5.30.(산림경영 30일 인정) 및 5.25.~6.30.(산림공학 35일 인정)

4) 경력 : 사업 참여 기간(중복기간 제외) + 재직기간

예) 산림사업법인에 1년 간 근무 시 : 사업참여일수 6개월(100%인정) + 나머지 재직기간 6개월(50%인정)
= 경력 9개월 인정

5)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도시공원” 내의 조경사업

4) 수탁기관,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류 제출 시 경력으로 인정하되 그 일수를 기준으로 인정

해석) **경력관리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 산림기술자 직무범위 내에서 그 일수를 경력으로 인정

5) 종사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표준품셈, 대가 인정기준 등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해석) 산림기술자가 신고한 경력이 사업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경우, **표준품셈 또는 대가기준**에 따라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업체의 대표자가 경력을 확인하는 경우

- 1) 소속업체 대표자가 경력확인서류에 제2호가목2)에 따라 경력을 확인해 준 경우 그 일수를 기준으로 100% 인정
- 2) 이직의 경우 이전 업체 대표자가 제2호가목1)에 따라 확인해 준 경우 100% 인정
- 3) 경력확인서류에 직무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일수인정이 불가하여 종사기간으로 작성한 경우 그 기간의 50%를 일수로 인정. 다만, 연도별로 구분하여 전문분야를 기재한 경우에만 인정

해석) 경력확인서(별지14호서식)에 직무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종사기간으로 작성한 경우 **직무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50% 일수 인정. 단, 전문분야(산림경영,산림공학,녹지조경)을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한함

- 4) 경력확인서류에 업체 대표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수탁기관은 법인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하여 그 기간의 50%를 일수로 인정

해석) 기술자가 퇴사한 업체가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확인서(별지14호서식)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림기술인회 소속 직원이 **법인관리시스템을 확인**하여 그 기간의 50%를 인정 할 수 있음.

다. 공공기관, 법정단체의 장이 경력을 확인하는 경우

- 1) 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기술자가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일수를 기준으로 100% 인정. 다만, 기술자의 직무내용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해석) 경력확인서(별지제14호서식)에 **직무내용(관련부서)별 종사기간**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로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100% 인정

- 2) 기술자가 경력확인서류에 직무내용별 종사기간을 인정하여 제출할 경우 그 직무범위와 기간에 대해 그 기간을 일수로 기재 시 100% 인정.
- 3) 경력확인서류에 직무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일수인정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종사기간으로 작성한 경우 그 기간의 50% 일수 인정
- 가) 연도별로 구분하여 전문분야를 기재한 경우

해석) 경력확인서(별지14호서식)에 직무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종사기간으로 작성한 경우 **직무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50% 일수 인정.

라. 기타의 경우

- 1) 기타 산림 및 녹지관련 사업자 소속으로 경력확인서에 제2호가목2)에 따라 경력을 확인해 준 경우 그 일수를 기준으로 100% 인정
- 2) 경력확인서류에 직무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산림경영 및 산림공학 등 전문분야로만 구분하여 업체 소속이거나 소속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종사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그 기간의 50% 일수 인정

해석) 경력확인서(별지14호서식)에 직무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종사기간으로 작성한 경우 직무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50% 일수 인정. 단, 전문분야(산림경영,산림공학,녹지조경)을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한함

- 3) 경력확인서에 직무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산림경영 및 산림공학 등 전문분야로만 구분하여 종사기간으로 작성한 경우 그 기간의 25% 일수 인정

해석) 산림사업법인이 아닌 경우(산림개발 인,허가서류 작성 대행업체 소속 기술자, 원목생산업자 등)종사기간의 25% 인정. 단,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증빙한 경우에 한함

목차 2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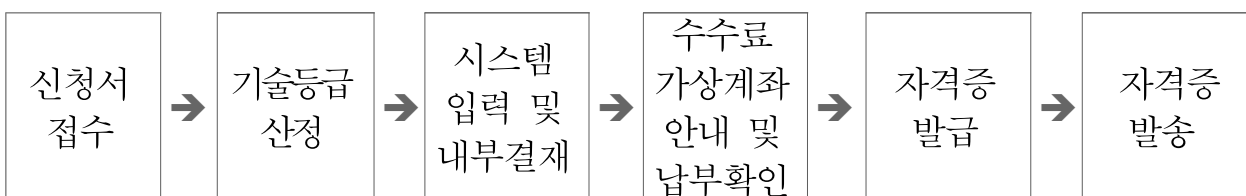
□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 및 발급절차

○ 자격증 발급 신청 → 민원인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 증명사진
 - 산림교육원 또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이수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경력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
 - 근무 경력 증빙서류
 - 법인 재직자 : 4대보험 가입 내역, 재직증명서, 근로 계약서, 임금 또는 사업비 지급 내역, 현장사진, 사업주가 없을 경우 동일직업에 종사하는 자 1인의 확인서(입증인 신분증 사본 첨부) 등 중 택1
 - 공무원 : 공무원 경력증명서 1부
 - 산림조합 :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최근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전체)
 - 자격증 사본
- ※ 주민등록초본, 자격증 사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여 확인이 어려우므로 서류 제출 필요

○ 신청서 접수 및 자격증 발급 → 수탁기관

- 민원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 자격증 발급 절차



✓ 자주묻는 질문

1. 자격증(경력증명서)의 대리 신청 가능 여부

- 산림기술자 자격증, 산림기술자경력증명서 모두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 서식 하단에 대리인 정보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 자격증 및 산림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관련

- 자격증,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금액과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음

◎ 수수료 금액

신청 내용	수수료
가.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1만7천원
나.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	5천원
다.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	5천원
라.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1만2천원

◎ 납부방법

- 가상계좌번호 시스템이 도입(2020.1.29.)됨에 따라 문자로 안내된 가상계좌 번호로 납부
- 2020년 1월 29일 이전에 납입고지서를 받은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 현장 납부 : 국고취급 은행, 우체국, 신한,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방문하여 납부
- 인터넷 납부방법
 - 은행(인터넷뱅킹) : 공과금 > 국세 > 기금, 기타국고납부 > 전자납부번호 조회
 - 지로(giro.go.kr) : 조회납부 > 국고금 > 기금, 기타국고 > 전자납부번호 조회
- 납부기간 이후에도 계속 수납 가능

3.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에 해당되는 경우

- 자격증의 기재사항(주소 제외)에 오류 또는 내용변경이 있거나, 파손, 분실의 경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가장 많은 민원으로 등급 상향의 경우는 법으로 지정된 재발급 사항이 아니므로 신규발급으로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 주요 조치사항 및 요령

-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누락 여부 확인 후, 민원인에게 추가 요청
 - 접수 일자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접수처리하고 접수번호 순으로 서류 앞장만 스캔
 - 접수 대장에 기재하여 처리여부 관리
- 기술등급 산정 : [별표 3] 산림기술자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와 부칙 제2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의 자격 요건과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기준에 따라 기술등급 산정 후 자격번호 부여

신청 등급	주요 확인 사항
기술특급	산림경영 → 산림기술사 취득 여부 산림공학 → 산림기술사 취득 및 공학 분야 2주 교육 수료 여부 녹지조경 → 조경기술사 취득 여부
기술고급 기술중급 기술초급	1) 기술 고급, 중급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취득 여부 확인 후, 해당 분야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일수 산정 - 근무경력은 근무 증빙서류 확인 후 50% 인정 - 기술경력은 근무 증빙서류, 실제 사업 참여여부 확인 후 100% 인정 ※ 근무 경력 인정 시,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에서 법인 목록 조회 후 해당분야 면허 보유 및 기술자 등록 여부 확인 必
	2) 기술 초급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사, 기사, 기술1급 취득 여부 - 기술2급은 기술 고급, 중급의 경우와 같이 근무경력 및 기술

	<p>경력 일수 산정</p> <p>✓ 자주묻는 질문</p> <p>1. 휴·폐업으로 경력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재직기간의 50%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경력확인서를 본인이 작성한 후 휴·폐업 사실을 증명하거나 수탁기관이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으로 확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경력으로 100% 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경력확인서를 상세하게 작성 후 기술 경력에 대하여 계약서류, 착수계 등 사업 수행 여부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p>2. 경력확인서 외 인정되는 경력증빙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등 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류 제출 시 별도 경력확인서(별지 제14호)없이 경력 증빙서류로 인정되며, 직무 내용 확인이 어려울 시 별지 제14호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p>3. 산림기술자 기술 2급을 가진 사람이 기술 1급을 취득 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 전 현장대리인 또는 공사감독관 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한하여 경력 인정하고, 취득 후 경력은 기준에 따라 현장 경력은 100%, 본사 근무 경력은 50%로 산정함 <p>4.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 한 경우(산업기사를 가진 사람이 기사를 취득 한 경우도 포함) 취득 전 경력 인정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기술자 직무범위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무 수행 경력을 발주청 등에서 확인한 경우 그 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100% 인정하되 현장근무 일수만 인정, 다만 산림 및 조경관련 사업에 참여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관 등 직무내용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기능 1급	산림기능사, 구)기능 1급 자격증 취득 여부
기능 2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자격인증 교육과정 해당 여부 확인 후 교육기간이 6주 이상 여부, 구)기능 2급 자격증 취득 여부

산림기술자 고유관리번호 분류 체계



[소재지]	[발급연도]	[종류/등급]	[발급번호]
	(뒤 두자리)		(다섯 자리 최초 00001 부터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 서울특별시 02 부산광역시 03 대구광역시 04 인천광역시 05 광주광역시 06 대전광역시 07 울산광역시 08 세종특별자치시 09 경기도 10 강원도 11 충청북도 12 충청남도 13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15 경상북도 16 경상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류(전) 1 산림경영 2 산림공학 3 녹지조경 *등급(후) 1 기술특급 2 기술고급 3 기술중급 4 기술초급 5 기능특급 6 기능1급 7 기능2급 	

- 시스템 입력 및 내부 결재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알림에 관한 시행문 결재 후 산림기술자자격증<산림기술자<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수수료 가상계좌 안내 및 납부 확인 : 기술등급 산정 결과 총괄표 작성 후, 기술자 개인마다 고유 가상계좌번호 부여하여 문자로 안내 후 실시간 수수료 납부현황 확인
- 자격증 발급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서식]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 자격증 발송 : 수수료 납부 확인된 기술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송

✓ 자주묻는 질문

1. 산림기술법에 따른 자격증 신규발급의 필수 여부

- 산림기술자 5종과 산림공학기술자 2종은 「산림기술법」 부칙 제4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자격증을 발급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
 - 산림경영기술자(5종) : 기술특급, 기술1급, 기능특급, 기능1급, 기능2급
 - 산림공학기술자(2종) : 기술특급, 기술1급
- 또한, 신규로 시행되는 기술고급, 기술중급 등의 자격은 「산림기술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관련업무를 해당기간 동안 종사한 것을 증명하면,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서 지속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 다만, 산림사업 발주청의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 등을 위해 가급적 신규 발급을 받도록 안내하여야 함

2. 중급 자격증 취득 후, 고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기 발급된 등급에서 상향되는 등급은 신규발급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발급 시 제출한 신청서류와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 증명사진
 - 산림교육원 또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이수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경력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
 - 경력확인서 제출 시, 근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4대보험 가입 내역, 재직증명서, 근로 계약서, 임금 또는 사업비 지급 내역, 현장사진, 사업주가 없을 경우 동일직업에 종사하는 자 1인의 확인서(입증인 신분증 사본 첨부) 등
 - 주민등록초본(최근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전체)
 - 자격증 사본
- 최초 신청 시 제출한 경력확인서로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있으므로 이전 서류를 참고할 수 있으나, 가급적 최초 제출한 서류와 신규서류 모두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산림기술자 자격증 관련 서식

○ 자격증 발급 신청 서식 → 민원인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산림기술자 자격증 [] 신규발급 []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직업	근무처	(전화:)	
신청명세	기술종류	등급	구분	재발급 사유
			[]신규발급 []재발급	
발급명세 (재발급)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규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산림교육원 또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이수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 증명사진	수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금액
	2.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가. 산림기술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 증명사진	
수탁기관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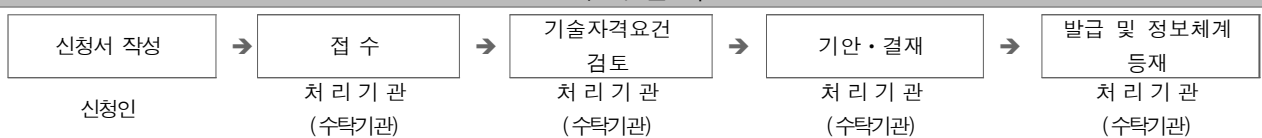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수탁기관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경력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업종(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연 번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청	
	사업구분	전문분야	사업종류	담당업무	직위	책임정도	
	사업(용역)개요(70자 이내 빈칸 포함)			사업(용역)금액 (백만원)		착공일	준공일(예정일)
	~						
	~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청, 사용자(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1. 기술경력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사신고 또는 일반적인 경력신고는 사용자(대표자)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여러 개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3. 대리인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격증 발급 서식 → 수탁기관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산림기술자 자격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150px; margin: 0 auto;"> <p style="text-align: center;">사 진</p> <p style="text-align: center;">3.5cm×4.5cm</p> <p style="text-align: center;">(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한 것)</p> </div>	<p>자격번호:</p> <p>종류·등급:</p> <p>성명:</p> <p>생년월일:</p> <p>주소:</p>
<p>위 사람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수탁기관의 장 직인</p>	

86mm×54mm(PVC(비닐) 980.4g/m²)

(뒤 쪽)

년 월 일	변경된 주소	확인 인
<p>< 유의 사항 ></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 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자격이 취소됩니다.</p>		
<p>2.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등에는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자격이 정지되거나 자격이 취소됩니다.</p>		
<p>3. 산림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p>		
<p>4. 이 자격증의 기재사항(주소 제외)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p>		
<p>※ 이 자격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p>		

○ 신청서류 작성 예시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견 본] 산림기술자 자격증 [●] 신규발급 []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234567-1234567	성별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34번길 29, 청사프라자 405호 (전화: 010-1234-5678)					
	직업	회사원	근무처	△△임업 (전화: 042-123-4567)			
신청명세	기술종류	등급	구분	재발급 사유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중급 기술고급	[●]신규발급 []재발급				
발급명세 (재발급)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19년 08월 05일
홍길동 (인)

신청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규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산림교육원 또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이수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 증명사진 (증명사진) 2.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가. 산림기술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 4.5cm 증명사진	수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금액
수탁기관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자격증 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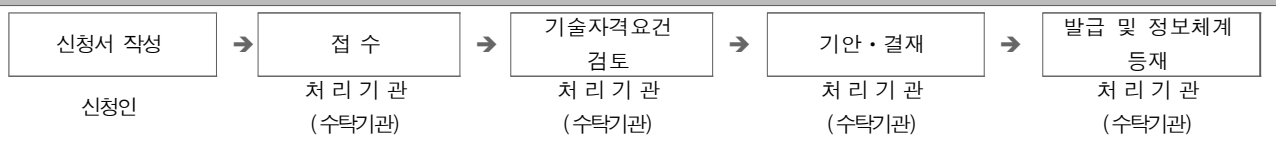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수탁기관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홍길동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견 본]

경력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홍길동 <i>Hong</i>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1234567-1234567
	전자우편 forest@mail.kr	전화번호 042-000-0000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34번길 29, 청사프라자 405호	휴대전화번호 010-0000-0000

소속회사	회사명 △△임업	대표자 김 숲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23-45-67890
	① 주소 (반드시 회사 소재지를 적어주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 134, 705호		업종(등록번호)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대전2019-010)
	입사일 1990.03.01	퇴사일 2018.12.31	전화번호 042-000-0000

기술경력

연 번	②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청	
	③ 사업구분	④ 전문분야	⑤사업종류	담당업무	직위	⑥ 책임정도	
	⑦사업(용역)개요(70자 이내 빈칸 포함)			사업(용역)금액 (백만원)		착공일	준공일(예정일)
1	1990.3.1.~1990.5.15. (2개월 15일)		대전광역시 동구 산 00번지 숲가꾸기 사업			○○시청	
	시행	산림경영	숲가꾸기	시공	과장	현장대리인	
	(참여기간이 0개월 0일인지까지 적어주세요)			10백만원		90.3.1	90.5.15
2	1991.4.30.~ 1991.7.10. (3개월 11일)		대전광역시 서구 산 00번지 임도 시공			○○시청	
	시행	산림공학	임도	시공	과장	현장대리인	
				5백만원		91.4.30	91.7.10
3	1990.03.01.~ 2018.12.31 (351개월 10일)		본 사 근 무				
	시행	산림공학		시공	과장	현장대리인	
	「산지관리법」 제0조에 따른 산지복구설계 (산지관련업무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사업인지 구분해주세요)			3백만원		90.3.1	18.12.31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업

직인

유의사항

- 기술경력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사신고 또는 일반적인 경력신고는 사용자(대표자)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러 개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 대리인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 기술경력이 해당 칸을 초과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 ① 소속회사 주소는 반드시 회사 소재지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 ② 참여기간은 총 0개월 0일에 해당하는지 작성해 주세요
- ③ 사업구분은 시행/용역 중 해당되는 사항을 적어주세요
* 시행은 시공업무에 해당 / 용역은 설계, 감리, 조사업무에 해당
- ④ 전문분야는 산림경영/산림공학/녹지조경 중 해당되는 사항을 적어주세요
- ⑤ 사업종류는 아래 해당하는 내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④전문분야	⑤사업종류
산림경영	-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 다음 산림사업의 설계·시공(시행)·감리 :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가지치기)사업, 도시림등(도시림·생활림·가로수),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 사업
산림공학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 - 다음 산림사업의 설계·시공(시행)·감리 :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포함), 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에 관한 사업,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수목장림 조성 및 관리 사업, 산림복원사업
녹지조경	- 다음 산림사업의 설계·시공(시행)·감리 : 수목원, 도시림등(도시림·생활림·가로수),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수목장림 조성 및 관리 사업

- ⑥ 책임정도에는 책임기술자/감리원/현장대리인/참여기술자/작업원 중 해당되는 사항을 적어주세요
- ⑦ 사업개요에는 사업종류가 ‘산지복구설계’, ‘산지조사’ 등 산지관련 업무일 경우 「산지관리법」에 근거하는 사업임을 명시해 주세요
- ⑧ 건설기술인협회, 엔지니어링협회 등 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 소속 회사가 여러 곳인 경우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1부 첨부]

- 경력확인서는 회사 당 1장이며, 전문분야(경영,공학,녹지조경) 별 작성
예시) 재직 기간

2019.01.01. - 2019.06.30. ○○임업(산림경영,산림토목 면허 有)

2019.07.01. - 2019.09.30. △△산림(산림토목 면허 有)

경력확인서 3장 필요 : ○○임업 (산림경영 경력확인서 1장)

○○임업 (산림공학 경력확인서 1장)

△△산림 (산림공학 경력확인서 1장)

※ 사업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경력인정방법

- 같은 전문분야의 사업은 처음 시작일부터 마지막 일까지 인정

ex) 조림(산림경영) : 3.30. ~ 4.15, 숲가꾸기(산림경영) 4.1.~4.30.

☞ 3.30 ~ 4.30 (산림경영 31일 인정)

- 다른 전문분야의 사업은 각각 인정

ex) 산림병해충 방제(산림경영) : 5.1~5.30, 사방댐(산림공학) : 5.25~6.30

☞ 5.1.~5.30.(산림경영 30일 인정) 및 5.25.~6.30.(산림공학 37일 인정)

목차 3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및 처리 절차

- 기재사항 변경 신청시 구비서류 → 민원인
 -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 산림기술자 자격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초본)
- 신청서 접수 → 수탁기관
 - 민원처리기간 : 즉시
 - 기재사항 변경 처리 절차



□ 주요 조치 사항

- 신청인이 제출한 초본을 확인하여 변경사항을 자격증 뒷면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 반드시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주소도 수정하여야 함

(뒤 쪽)

년 월 일	변경된 주소	확인 인
2019.08.26	서울특별시 00구 00로 1234	한국산림기술인회
< 유 의 사 항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자격이 취소됩니다. 2.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등에는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자격이 정지되거나 자격이 취소됩니다. 3. 산림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4. 이 자격증의 기재사항(주소 제외)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이 자격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관련 서식

○ 자격증 발급 신청 서식 → 민원인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자격 종류 및 등급			
기재사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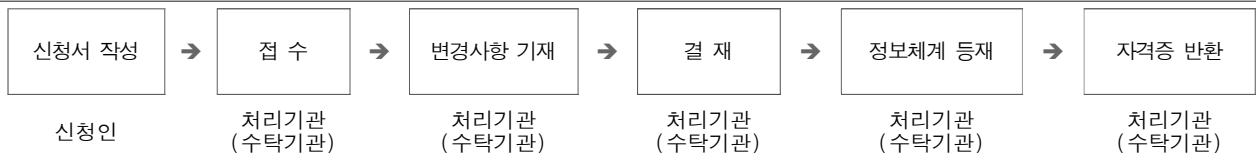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산림기술자 자격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산림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

업무흐름도

산림기술자경력증명서
신청서 접수

(처리기간 즉시)



서류 검토



내부 기안·결재



수수료 안내 및 납부확인



경력증명서 발급



경력증명서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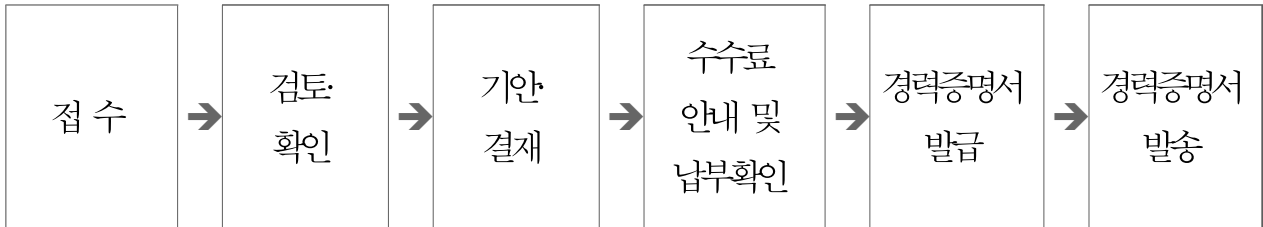
주요 조치할 사항

- 신청서류 확인
 -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
 - 경력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
 - 근무처 또는 경력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
- 경력 확인
 - 근무처 재직 여부 확인
 - 기술경력 진위여부 확인
(발주청 또는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 내 산림기술자배치 참조)
- 경력증명서 발급 알림 내부 기안
- 경력증명서 발급자에 가상계좌 부여하여 납입수수료 문자로 안내 후 납부 확인
- 산림기술자경력증명서[별지 제16호 서식]에 발급한 후 정보체계 등재(현재 정보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보체계 등재 업무는 생략)
- 경력증명서 발송(아래 서류 동봉할 것)
 - 경력증명서 발급 알림 공문
 - 산림기술자경력증명서
 - 기술인회 안내문
 - 회원가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목차 4 산림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

□ 산림기술자경력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

- 경력증명서 신청시 구비서류 → 민원인
 -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별지 제13호 서식]
 - 경력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
 - 근무처 또는 경력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
- 신청서 접수 → 수탁기관
 - 민원처리기간 : 즉시
 - ※ 민원처리기간이 즉시나 경력증명서 수수료 고지서 발급과 관련하여 약 5일이 소모되므로 민원인에게 안내 시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야 함
 - 산림기술자경력증명서 발급 절차



□ 주요 조치사항

- 경력확인서 기술경력 확인 시
 - 발급 발주건은 인허가 서류나 조사야장, 사업 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기술 경력의 실제 수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발급 발주건은 산림사업법인관리시스템>산림기술자배치에서 현장대리인 또는 작업원으로 수행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 건은 발주청에 작업원 명부 또는 착수계를 요청하거나 구두상으로 실제 수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산림기술자경력증명서 관련 서식

○ 자격증 발급 신청 서식 → 민원인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주소					
산림기술자 자격사항	자격종류	자격등급	자격번호	취득일		
근무처	업종	업체명	등록번호	근무기간	담당업무	부서/직위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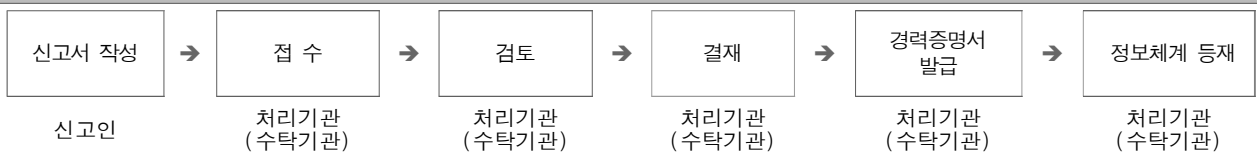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경력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업종(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연 번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청	
	사업구분	전문분야	사업종류	담당업무	직위	책임정도	
	사업(용역)개요(70자 이내 빈칸 포함)				사업(용역)금액 (백만원)	착공일	준공일(예정일)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청, 사용자(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1. 기술경력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사신고 또는 일반적인 경력신고는 사용자(대표자)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여러 개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3. 대리인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소속회사	업체명	전화번호		
신청분야	직무 및 전문분야			
발급 번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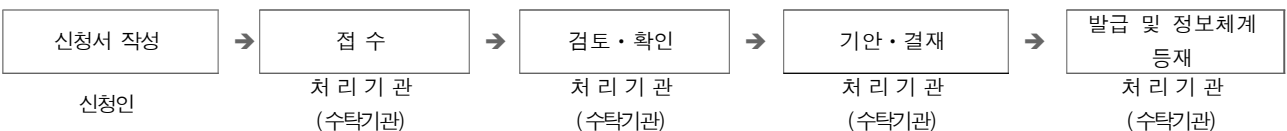
수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금액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경력증명서 수령)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산림기술자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흐름도

지방산림청 행정처분
내역 접수



시스템 입력 및
자격증 반납요청



행정처분 내용
산림청 고지



산림기술정보체계
행정처분 공고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 관리

주요 조치할 사항

○ 지방산림청에서 행정처분한 자에 대한 공문과 내역을 확인 후 접수

○ 산림기술정보체계 입력
- 해당 자격증에 대하여 자격 상태를 처분정도에 따라 변경하고 산림기술자로부터 해당 자격증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함

○ 지방청에서 받은 행정처분 내역과 시스템 입력, 자격증 반납 여부를 산림청에 고지하여야 함

○ 산림기술자 자격취소, 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함

○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 관리[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관련 내용 관리

목차 5 산림기술자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 산림기술자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별표 2]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자격정지 처분만 해당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다.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2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취소

라.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3호	자격취소		
마.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4호	자격취소		
바.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5호	자격정지 36개월	자격취소	
사. 발주청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6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취소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7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 주요 조치사항

○ 행정처분 관련 내용

- 지방청에서 자격취소(정지) 통보를 받은 즉시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고 관련 지방청 협조를 통하여 자격취소(정지)받은 산림기술자 자격증 반납 받아야 함
- 산림청으로 관련 내용 처리 결과 통보하여야 함
- 산림기술정보체계에 행정처분 관련 내용을 [붙임1]과 같이 공고하여야 함

○ 별점 종합관리 관련 내용

- 지방청에서 별점 관련 통보를 받을 시, 별점 총괄표 입력 및 누계를 관리하여야 함

□ 행정처분 관련 주요 서식

[붙임1]

한국산림기술인회 공고 제2019 - 000호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취소) 공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기술자 행정처분(자격정지,취소)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8 월 00 일

한 국 산 립 기 술 인 회 장

가. 처분내용 : 산림기술자 자격정지, 자격취소

나. 처분대상자

기술종류	기술등급	성명	자격번호	처분일자	처분 내용	처분 내역	
						사유	처분종료일
산림경영 기술자	기술1급	홍길동	경북 2012-1234	2019-07-08	자격정지 1개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	2019-08-08

